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새로운 취급에 대하여

## 대 응 방 침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현재까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확대 영향으로 인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시기가 늦어진 분을 배려하여, 입국 수속에 필요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이하 '인정증명서'라고 한다.)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강구해왔습니다(아래 '지금까지의 취급' 참조).

◎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확대가 여전히 입국 수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증명서 유효기간의 추가적인 연장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아래 '새로운 취급' 참조).

※ 또한 인정증명서는 교부 시점에 상륙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유효로 간주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하면 인정증명서 교부 시의 상황과 입국 시의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커지므로 아래의 새로운 취급 이후 인정증명서 유효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은 시행하지 않지만, **지난번 신청 내용에서 변경이 없고 2022년 7월 31일 이후 당청이 지정하는 날까지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①이미 교부받은 인정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및 ②받아들이는 기관 등이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새로운 인정증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여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취급	새로운 취급
①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류 자격	① 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류 자격
②대상 지역 모든 국가·지역	②대상 지역 모든 국가·지역
③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b>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것</b>	③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b>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것</b>
④유효로 간주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일이 2019년 10월 1일~12월 31일 → <b>2021년 4월 30일까지</b></li> <li>· 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1년 1월 30일 → <b>2021년 7월 31일까지</b></li> <li>· 작성일이 2021년 1월 31일~ → <b>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b></li> </ul>	④유효로 간주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1년 7월 31일</b> → <b>2022년 1월 31일까지</b></li> <li>· <b>작성일이 2021년 8월 1일~2022년 1월 31일</b> → <b>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b></li> </ul>
⑤유효로 간주하는 조건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 발급 신청 시에 받아들이는 기관 등이 “앞으로도 계속,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의 활동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⑤유효로 간주하는 조건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 발급 신청 시에 받아들이는 기관 등이 “앞으로도 계속,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의 활동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u>참고 양식 &lt;별표 제1의 재류 자격(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등)용&gt;</u> <u>참고 양식 &lt;별표 제2의 재류 자격(예: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용&gt;</u> ※사증(비자) 신청 이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상기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